

2022년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설명회



목차



송주법 지원사업 개요



2022년 지원사업 안내

 직접지원사업

 공동지원사업



Q&A



송주법 지원사업 개요

▶ 송주법 제정 목적

- ✓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수립
- ✓ 비슷한 경우의 발전소, 댐, 폐기물 주변지역 지원법은 시행 중

송주법 제정
(14.1.28)

▶ 시행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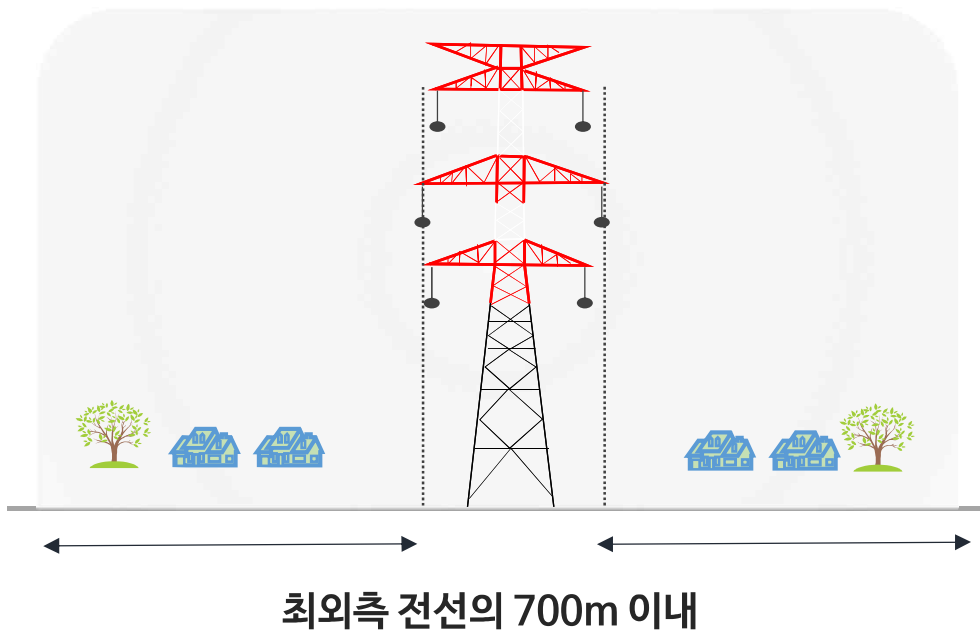
-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 1. 28)
- ✓ 2022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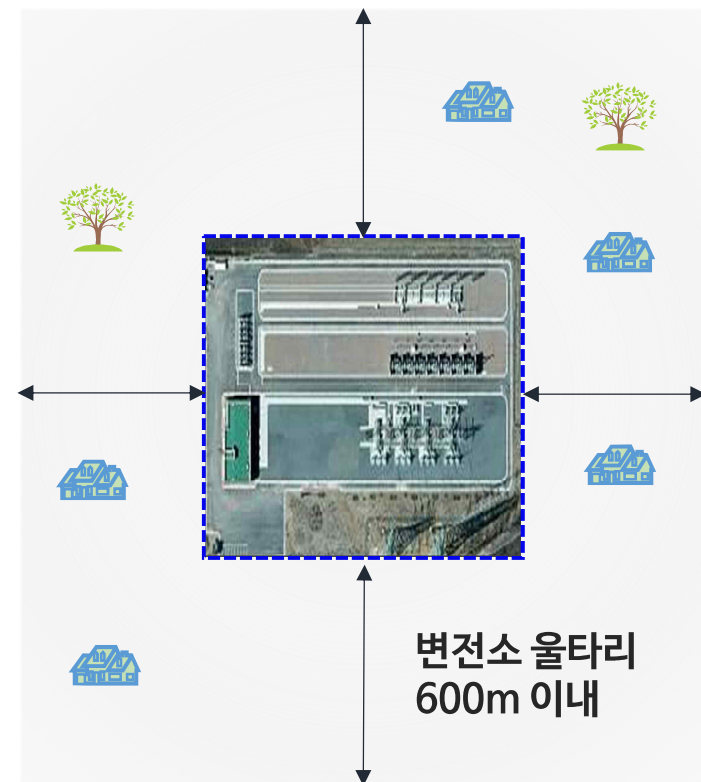
송주법 지원사업 개요

송주법 지원대상 범위

▶ 송전선로 주변지역 (345kV)



▶ 옥외변전소 주변지역 (345kV)



해당 지원범위 내 **주민등록된 실거주 세대**



2022년 지원사업 안내



주민직접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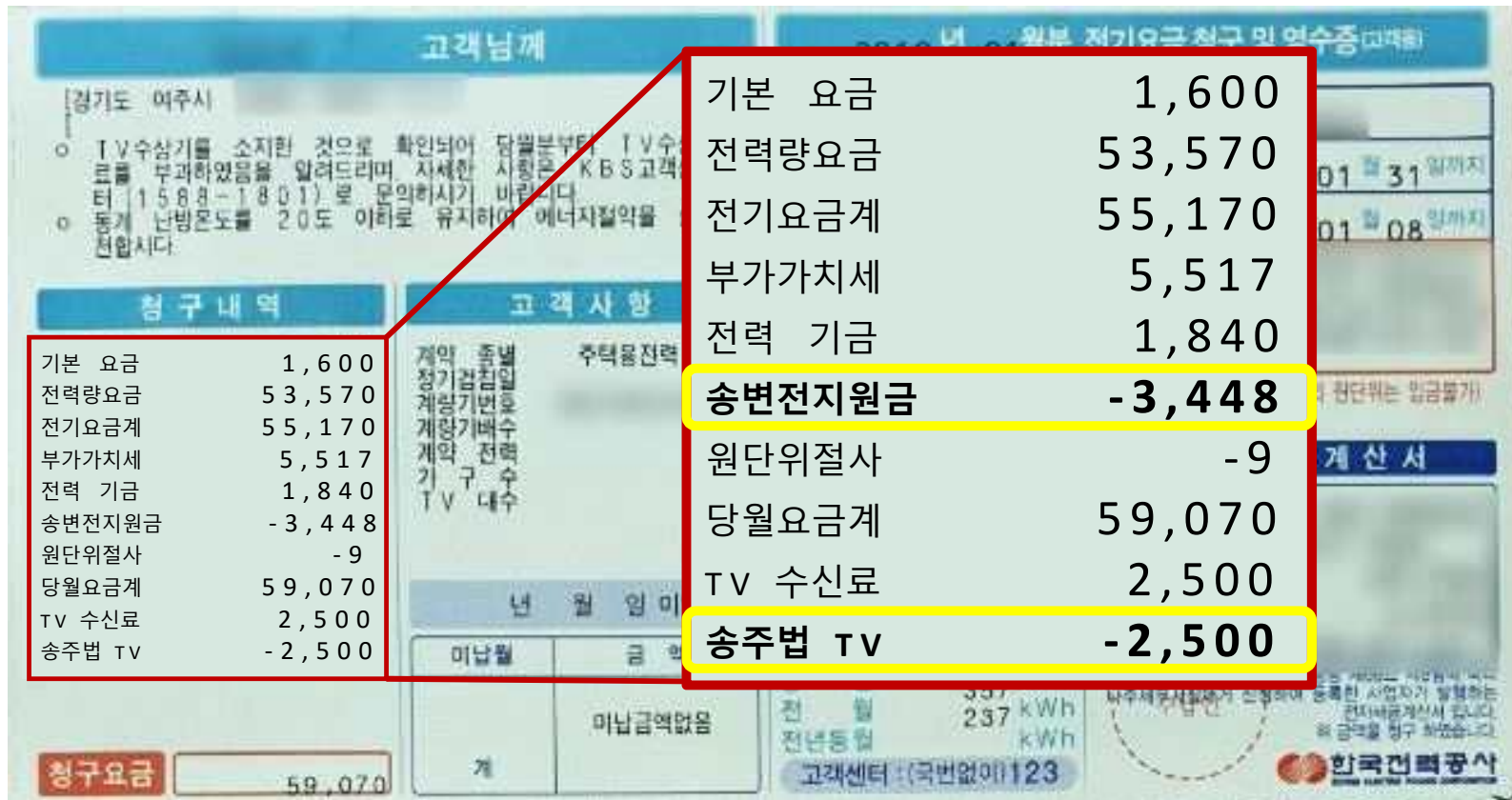


2022년 지원사업 안내

주민직접지원사업

✓ 개별세대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으로 해당 지원지역에 지원되는 총 지원금의 50%범위에서 지원

✓ 전기요금 보조 형식으로 지원되며, 지원금 잔액(15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상품권 교환



고객님계		고객사항	
기본 요금	1,600	계약 종별	주택용전력
전력량요금	53,570	장기검침일	
전기요금계	55,170	계량기번호	
부가가치세	5,517	계약 전력	
전력 기금	1,840	기 구 수	
송변전지원금	-3,448	TV 대수	
원단위절사	-9		
당월요금계	59,070		
TV 수신료	2,500		
송주법 TV	-2,500		

청구요금 59,070

전 월 357 kWh
전년동월 237 kWh

고객센터 : (국번없이) 123

한국전력공사



2022년 지원사업 안내

주민직접지원사업

- ✓ 2022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21.6)

세대수 산정 기준일 (21.09.12)

- 주민지원사업 신청완료일(21.9.12)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세대로 확정
(단, 해당 주변지역에 전입신고된 실거주 세대)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전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신청일 이후 접수세대 (21.09.13 ~)

- 21.09.13 ~ 22. 09. 12 신청시 23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2022년 지원사업 안내

주민직접지원사업 유의사항

✓ 사업의 중단

지원사업의 중단 사례

- 지원세대의 사망, 퇴거, 주민등록 상 전출 확인 시
- 1년간 전력사용량이 없어, 위장전입 등이 의심될 시
- 행정상의 오류로 지원대상이 아님이 확인 될 시



지원금의 회수 및 처리

- 집행되지 않은 지원금은 회수되어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지원금에 합산하여 지원 (전국사업비로 합산하여 재분배)



2022년 지원사업 안내



주민공동지원사업



2022년 지원사업 안내

주민공동지원사업

✓ 지원단위: 기초행정지역(00동00통 또는 00면00리)

※ 단, 여러 통으로 구분되는 아파트의 경우 해당 단지를 1개의 기초행정지역으로 할 수 있다.

✓ 지원사업의 대행자: **주민대표 (마을주민)**

✓ 지원금 산정



해당 통,리의 신청세대수

송변전 설비 전압

송변전 설비 종류

지리적 특성



2022년 지원 사업 안내

송주법 지원사업 절차

① 주민대표 선임(5명~10명)

- 마을별 신청세대의 과반수 이상 동의 필요



② 공동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주민의견 수렴, 한전의 사업승인 필요



③ 공동지원사업 대행 협약서 체결

- 한전-주민대표 간 협약서 체결
- 공동명의계좌 개설(대표가 은행에서 발급)/전용카드 발급(한전)



④ 지원금 지급신청

- 비교견적/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 지원금신청서, 증빙서류(견적서 등)를 첨부하여 한전에 신청



⑤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신청 후 최대 20일 소요
- ③에서 등록한 공동명의계좌 또는 전용카드로 입금



⑥ 사업 진행

- 사업 진행 후 지원사업 전/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회의록, 현금지급증 등 제출



⑦ 실적,결산보고

- 실적(완료)보고서, 결산보고서 제출(11월 말까지 제출)



2022년 지원 사업 안내

주인대표 선임

서식1

주민(공동)대표 선임 동의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 기초행정지역명 :
- 선임목적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협의 권한 위임
- 선임기준 : 총 _____ 세대의 과반수 _____ 세대 이상 등의
- 선임임기 : 3년 (사업 시행년도 기준)

주민대표 : 지원사업 협의, 시행, 결과보고 등 주관(1인)

성명	주소	연락처	비고

주민 공동대표 : 지원사업 공동 시행(4인)

성명	주소	연락처	비고

* 추가인원 필요시 9인까지 가능(단, 50세대 이하인 마을 최소 1인 이상)

상기 주민을 우리마을 주민(공동)대표로 선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대행협약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 및 협의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에 동의합니다.

2020. .

제출일 :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장 귀하

주민(공동)대표는 선임 동의 주민서명부의 위 변조가 없음을 확인하며, 위 변조에 따른 법률적 책임은 주민(공동)대표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주민대표	공동대표	공동대표	공동대표	공동대표
(인)	(인)	(인)	(인)	(인)

이 영부는 송주법 지원사업 주민(공동)대표 선임동의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71조)

주민(공동)대표 선임 동의 주민서명부

- 선임목적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협의 권한 위임
- 마을명 :
- 임 기 : 3년 (사업 시행년도 기준)

주민(공동)대표

직위	도표명 주소	공동 주택명	동 호	연락처	성명	비고
주민대표						
공동대표						
공동대표						
공동대표						
공동대표						

주민서명부(세대당 1명)

순번	성명	도표명 주소	공동 주택명	동 호	연락처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2022년 지원 사업 안내

공동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서 (예시2)					
신청 주변 지역	기호행정지역명	인천광역시 ○○구 ○○동 ○○통			
	주민대표	홍길동			
	전 화	010-123-1234	FAX	043-123-1234	
	E-mail				
	주 소	(우 -)			
신청 사업	사업의종류	주민복지사업, 그밖의 지원사업			
	사 업 명	담장보수공사, 효도관광, 불우이웃돕기, CCTV 보수 및 관리			
	사업의 목적	주거환경 개선 및 재난/안전관리			
	신청세대수	000세대			
	사업비 (천원)	총사업비	1/4	2/4	3/4
	사업기간	2020. 3 ~ 2020. 10			
<p>위와 같이 2020년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기호행정지역명 : ○○동○○통</p> <p style="text-align: center;">주 민 대 표 ○ ○ ○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공동대표 ○ ○ ○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 ○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 ○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 ○ (직인)</p> <p>사 업 자 귀하</p> <p>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p>					

<붙임>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담장보수공사, 효도관광, 불우이웃돕기, CCTV 보수 및 관리
2. 사업목적 :
3.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20.3 ~ 20.10
5. 소요예산 (천원)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계
사업비					

6. 사업계획

일정	항목	추진내용	비고
20.3	담장보수	보수공사 시행	
20.4	효도관광	업체 선정, 관광 시행	
20.5	CCTV보수	CCTV 보수	

7. 사업비 산출내역 (천원)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비고



2022년 지원 사업 안내



공동지원사업 대행 협약서

송주법 공동지원사업 협약서

(한국전력공사 - □□시 □□구(읍) □□동(면) □□동(리))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시 □□구(읍) □□동(면) □□동(리) 주변지역 "주민대표"간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시행하는 "유상방수공사(2020-00***2-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수행 관련 대행업무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변 근거)

본 협약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의 시행령 제23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달한 「{사업연도}년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사업연도-1}.06)의 '지원사업의 시행'에 근거하여 체결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공동지원사업"이라 함은 송주법 법률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2, 3, 4, 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
 - ② "지원사업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은 공동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기초자치단체장을 말한다.
 - ③ "지원사업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함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공동지원사업의 대행 협약을 체결한 주민(공동)대표,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 ④ "공동지원사업 전용카드(이하 "전용카드")"라 함은 한전이 「송주법 공동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 주민대표에게 공동지원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발행하는 체크카드를 말한다.
 - ⑤ "지원금"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3 및 시행령 제25조1에 규정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기초행정지역 단위로 배분한 금액 중 공동지원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⑥ "주민(공동)대표"라 함은 기초행정지역별 주변지역 주민 과반수 동의로 선출되어 협의 권한등을 위임받은 자로, 주민대표는 지원사업 협의, 시행, 결과보고 등을 주관하고 주변지역의 주민 요구사항 사업 진행사항 및 관련서류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동대표는 이를 공동으로 이행한다.
 - ⑦ "전용카드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공동지원사업 지원금 관리와 전용카드 사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제20조 (협약위반의 처리)

한전은 주민대표가 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송주법령,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 업무절차서(사업자 내부지침) 및 본 협약서 제12조에 의한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1조 (기타)

- ① 주민대표는 허위시행이나 현금(상품권 등 유가증권) 및 가구생활 영위를 위한 물품(식료품, 가전제품, 교통카드, 유류, 종량제 봉투 등) 배분 등 공동지원사업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 ② 상기 ①항을 위반할 경우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당사자들은 본 협약의 이행을 확약하고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시 □□구(읍) □□동(면) □□동(리)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주민대표 ○○○ (인)
○○○ (인)
○○○ (인)
○○○ (인)
○○○ (인)

인천본부장 김 홍 균 (인)



2022년 지원 사업 안내

공동지원사업 종류

- ✓ 현금(상품권) 및 생필품(식료품, 가전제품, 교통카드, 종량제 봉투, 목욕권 등) 배분 금지
- ✓ 주민 공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선정

주민복지사업

- 주택의 개량
- 건강·운동·오락시설의 건립/운영
- 문화체험 및 관광의 실시
- 교통수단의 제공(미니버스 등)
- 도서관, 놀이방, 공부방 등 건립/운영

소득증대사업

- 태양광 시설 설치 및 운영
- 산림부산물 퇴비화의 지원
- 농작물, 임산물의 재배, 가공, 판매 지원
- 가축/수산물 사육/재배 및 판매의 지원
- 농지 매매 및 임대차 자금지원

육영사업

- 평생교육의 지원
- 농어촌학교의 운영
- 장학기금의 적립
- 기숙사의 제공
- 교육기자재 및 학교급식의 지원

그 밖의 지원사업

- 주민 건강검진의 실시
- 재난/안전관리(CCTV, 소화기 설치)
- 농기구 공동활용 지원



2022년 지원 사업 안내

공동지원사업 유의사항

✓ 사업의 중단 및 회수

지원사업의 중단

- 송·변전설비의 운영이 3년 이상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대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승인 이후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 주민간 갈등으로 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대행자가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 횡령** 등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원사업의 회수

- 대행자가 공동지원사업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 당해년도 말까지 지원사업 집행계획이 없거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Q&A



Q&A



감사합니다.

